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31. ~ 2025.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 분야의 <u>보유자</u> 는 제28조제2 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 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 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 ----- ----- <u>보유자 및 전승교육사</u>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966